

의안번호	제 348 호
의결년월일	1996. 5. 28. (제 44 회)

의결 사항	의안 가결
----------	----------

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년월일	1996. 4. 27.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348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1996. 4. 27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호적법시행규칙개정('95.6.5)으로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금액이 변경되어 이에 관련 조문을 개정·보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과태료 부과기준 전면 개정

해 태 기 간	과 태 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1월 미만	10,000원	20,000원
1월이상 3월미만	20,000원	40,000원
3월이상 6월미만	30,000원	60,000원
6월 이상	50,000원	100,000원

3. 본 문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'해태기간, 신고의무자의 학력, 생활정도, 해태이유, 해태지역등'을 '해태기간'으로 하고, '별표2'와 '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3호'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과태료 부과기준 (제4조 제1항 관련)

예태기간	과태료	
	제130조 위반	제131조 위반
1월 미만	10,000원	20,000원
1월이상 3월미만	20,000원	40,000원
3월이상 6월미만	30,000원	60,000원
6월 이상	50,000원	100,000원

과 태 료 결 정 자 료 부

신고 또는 신청의무자		① 위반조항	② 과태료액	③ 해 태 기 간				비 고
				1월미만	1월이상 ~ 3월미만	3월이상 ~ 6월미만	6월이상	
주 소	성 명							

268mm × 190mm 인쇄용지 (2급) 60g/㎡

※ 작성요령

1. 위반조항은 호적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와 별표 1의 근거법령안 해당조문을 기입
2. 과태료액은 조례 제7조에 의한 산정금액 기입
3. 해태기간은 1월미만, 1월이상~3월미만, 3월이상~6월미만, 6월이상 구분

신 · 구조문 대 조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부과기준 및 면제) ①읍·면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<u>해태기간</u>, 신고의무자의 학력, 생활정도, <u>해태이유</u>, <u>해태지역등을</u> 참작하여야 하며,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	<p>제4조(부과기준 및 면제) ①----- -----<u>해태기간</u> ----- ----- -----</p>